



대학원 학위논문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 지침

[시행 2020. 12. 2] [서울대학교학교지침 제-호, 2020. 12. 2, 일부개정]

서울대학교 교무처 교무과 02-880-5161

제1조(목적) 본 지침은 대학원 학위논문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및 신청

제2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이하 “학위수여 규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5. 9. 24., 2020. 9. 1.]

1.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종합시험, 영어, 제2외국어)에 합격한 자
2. 각 대학(원)에서 정한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당해학기말까지 취득하였거나 취득가능한 자
3. 학위 논문제출 허용 기한(과정 수료후 석사 4년, 박사 6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4. 「학위수여 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라 논문제출기한 연장 승인을 받은 자 [개정 2015. 9. 24., 2020. 9. 1.]
5. 「학위수여 규정」 제11조제5항에 따라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받은 자 [개정 2015. 9. 24., 2020. 9. 1.]
6. 대학원 과정 수료자로서 대학원연구생 등록을 필한 자
7. 기타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에 관하여 각 대학(원)이 정한 별도의 요건을 충족한 자

제3조(신청 및 심사대상자 결정) ① 학위논문(실적심사)을 심사받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된 기간에 논문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소속 학과(부)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논문심사원 또는 논문심사 요구서
 2. 지도교수 추천서(박사과정에 한함)
 3. 이력서(박사과정에 한함)
 4. 논문심사위원 명단 [개정 2010. 12. 10.]
 5. 심사용 청구논문(석사과정 3부, 박사과정 5부)
 6.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개정 2010. 12. 10.]
 7. 기타 각 대학(원)에서 필요한 서류
- ② 각 대학(원)의 장은 제1항의 학위논문심사 서류를 제출한 자 중에서 논문심사 대상자를 결정 후 그 결과를 1학기는 4월 말, 2학기는 10월말까지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논문지도교수

제4조(논문지도교수 선정 및 변경) ① 「학위수여 규정」 제5조제4항에 따라 논문지도교수는 학생 1인당 1명으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추가로 2명 이내의 공동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4., 2020. 9. 1.]

1. 학제적 성격의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경우
2. 국내외 대학 또는 기관과 공동학위나 복수학위 수여협정을 체결한 경우

3. 「학위수여 규정」 제5조제6항에 따라 타 학과(부)·전공의 교원을 논문지도교수로 선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각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학위수여 규정」 제5조제3항 단서 및 제6항에 따라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거나 타 학과(부)·전공의 교원을 논문지도교수로 선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을 소속 학과(부)장 또는 전공주임에게 제출해야 하며, 학과(부)장 또는 전공주임은 이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0. 9. 1.]

[제목개정 2020. 9. 1.]

제5조(논문지도교수 자격) ① 논문지도교수의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2. 2., 2008. 11. 13., 2009. 7. 7., 2015. 9. 24., 2020. 12. 2.]

1. 석사과정은 본교 전임교원, 겸무교원 및 기금교원으로 한다.

2. 박사과정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겸무교원 및 기금부교수 이상의 기금교원으로 한다. 다만, 작성 논문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각 대학(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기금조교수도 할 수 있다.

② 삭제 [2020. 12. 2.]

③ 공동논문지도교수는 본교 본교 전임교원, 기금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특임교원, 임상교원, 객원교원, 외래교원, 석좌교수, 국내·외 학술교류협정 대학 및 기관의 교원으로 하되 자격은 제1항에 준한다. [개정 2015. 9. 24., 2020. 4. 3., 2020. 12. 2.]

제6조(논문지도교수 선정시기 등) ① 「학위수여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논문지도교수의 선정은 입학 후 2개 학기 이내에서 각 대학(원)장이 정한다. 다만, 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휴학한 자는 복학 후 3개월 이내에 선정한다. [개정 2015. 9. 24., 2020. 9. 1.]

② 기타 논문지도교수에 관한 선정절차, 학생배정기준 등의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의 장이 정한다.

제3장 논문심사위원

제7조(논문심사위원의 자격) ① 「학위수여 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9. 24., 2020. 9. 1., 2020. 12. 2.]

1. 본교의 전임교원, 기금교원, HK교원, 비전임교원

2.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의 전문가로서 학과(부)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② 「학위수여 규정」 제24조제1항에 따라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9. 24., 2020. 9. 1., 2020. 12. 2.]

1. 본교의 전임교원, 기금교원, HK교원, 비전임교원

2.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의 전문가로서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타교 교원으로서 조교수 이상인 자

나.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 연구분야에 근무한 자

다. 기타 위 가·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다고 각 대학(원)의 장이 인정하는 자

제8조(논문심사위원의 추천 및 구성) ① 논문지도교수는 논문제출자 1명에 대하여 제7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석사과정은 3명 이상, 박사과정은 5명 이상의 심사위원을 학과(부)장을 경유하여 소속 대학(원)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0. 9. 1.]

② 「학위수여 규정」 제19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라 각 대학(원)의 장은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논문 제출자 1명에 대하여 석사과정은 3명 이상(위원장, 부위원장, 1명 이상의 위원), 박사과정은 5명 이상(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3명 이상의 위원)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20. 9. 1., 2020. 9. 2.]

③ 각 대학(원)의 장은 1명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대상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심사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

④ 박사과정의 논문심사 위원 선정시 반드시 교외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

- ⑤ 각 대학(원)의 장은 심사위원 위촉 후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위원을 변경·위촉하고자 할 경우 최종논문심사 종료 전까지 변경할 수 있다.
- ⑥ 각 대학(원)의 장은 제2항 및 제5항의 위촉결과를 박사과정에 한하여 1학기는 4월말, 2학기는 10월말까지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위원장) ① 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논문지도교수, 명예교수 및 교외전문가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 ③ 심사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기타 심사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 ④ 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의 진행을 주관하고, 심사결과를 심사요지와 함께 소정 기일 내에 학과(부)장을 경유하여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논문심사 및 평가방법 등

제10조(논문요지 발표, 예비심사 및 본심사) ① 각 대학(원)의 장은 학위논문 제출자에 대하여 각 학과(부)장 또는 심사위원장의 책임 하에 논문요지 발표회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학위논문의 예비심사는 박사과정의 학위논문 제출자에 한하여 각 학과(부)장 또는 심사위원장의 책임 하에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논문심사위원은 논문 예비심사에 있어서 학위논문 제출자의 연구태도, 논문주제의 타당성, 취급방법의 타당성, 연구 성과 등을 심사하여 당해 학기 내에 완성 가능성을 판정한다.
- ④ 학위논문의 본 심사는 각 대학(원)장이 정한 소정의 기일 내에 심사위원장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 ⑤ 학위논문 본 심사에서는 논문의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보완이 이루어졌는가를 검토하고 내용과 체계상으로 학위논문으로서의 결함이 있는가를 판정한다.
- ⑥ 학위수여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위원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위논문 제출자에게 참고논문 또는 부분·역본·모형·표본 및 기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논문심사 및 구술고사 평가방법) ① 석사학위 논문은 “A(심사위원 전원 찬성)”, “B(심사위원 2/3 찬성)”, “C(심사위원 1/3이하 찬성)”으로 평가하되, 논문심사 합격은 논문성적 “B” 이상이어야 한다.

- ② 박사학위 논문심사 합격은 심사위원 5분의 4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 ③ 구술고사는 논문의 최종심사시에 시행하며, 합격점수는 100점 만점에 석사과정은 평균 60점이상, 박사과정은 평균 70점 이상(심사위원 4/5이상이 70점 이상이어야 함)이어야 한다.
- ④ 심사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소정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각 대학(원)의 장은 최종 심사결과를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학기는 7월말, 2학기는 1월말까지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영전문대학원은 자체 학사일정에 따라 매학기 심사 종료 후 10일이내에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논문심사기간 연장) ① 「학위수여 규정」 제25조제4항에 따라 각 대학(원)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박사과정 논문심사자에 한하여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기간을 1개 학기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

- ② 논문심사기간 연장 승인을 받은 자는 반드시 심사기간 연장 승인 받은 다음 학기에 논문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 ③ 논문심사기간 연장 승인을 받은 자의 다음 학기 논문심사대상자 관련 서류 제출은 생략한다. 다만, 심사위원 변경시 각 대학(원)의 장은 그 결과를 소정 기간 내에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논문심사결과에 따른 다음 학기 심사 절차) 학위논문심사 판정결과(“철회”, “심사기간연장”, “불합격”)에 따른 다음 학기 논문심사진행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14조(문서의 보관) 각 대학(원)의 장은 학위논문심사 관련 문서를 매학기 학위논문심사 종료 후 자체적으로 보관하되, 보존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5장 학위논문 제출 및 공표

제15조(학위논문 제출 및 미제출자 처리) ① 학위논문 심사에서 합격 받은 자(이하 “학위논문심사 합격자”라 한다)는 논문지도 교수의 지도하에 심사에서 수정 보완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 논문을 최종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학위논문의 작성방법, 규격 및 형식은 따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학칙 제89조(대학원과정의 졸업)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논문심사 합격자는 심사위원 전원이 인준지에 서명 또는 날인한 최종 인증된 학위논문의 전자과일을 당해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각 대학(원)장이 정하는 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4., 2020. 12. 2.]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대학(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위논문 제출기한을 1개 학기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자에게는 학위 논문을 제출한 학기에 학위를 수여한다.

⑤ 학위수여대상에서 유보된 자의 다음 학기 논문심사대상자 등록서류 제출은 생략한다.

⑥ 각 대학(원)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의 처리결과를 매학기 소정 기일 내에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각 대학(원)의 장은 자체 보관용으로 학위논문 심사 합격자에게 별도의 학위논문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6조(학위논문의 공표) ① 「학위수여 규정」 제27조에 따라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학위취득 후 1년 이내에 단행본 발간, 학회지 게재, 정기간행물 게재, 국제학술지 게재, 학술세미나에서 발표, 기타의 방법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4., 2020. 9. 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위취득자가 특허출원예정, 군사상 비밀,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학위논문 공표유보를 신청한 경우 각 대학(원)장은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에서 공표를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학위논문 공표 유보를 받은 학위취득자가 추가로 공표유보를 신청한 경우 각 대학(원)장은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에서 공표 유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4.]

④ 각 대학(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공표유보 대상자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중앙도서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4.]

제6장 학위수여 및 취소

제17조(해당학과 학위와 다른 종별 학위수여) ① 「학위수여 규정」 제2조제2항에 따라 해당학과와 다른 종별의 학위를 수여하고자 하는 대학(원)장은 대학(원) 내 학과간 또는 대학(원)간 협의를 거친 후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9. 1.]

② 해당학과와 다른 종별의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논문심사위원 위촉시 학위종별변경신청서를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

③ 제2항의 신청자가 있는 경우 대학(원)장은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학과와 다른 종별의 학위에 대한 논문심사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논문심사대상자 명단 및 논문심사위원 선정결과 보고시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승인받아야 한다. [개정 2009. 12. 2., 2020. 9. 1.]

제18조(논문심사 합격자중 수료요건 등 미충족자 처리) ① 논문심사 합격자중 「서울대학교 학칙」 제78조(과정 이수 학점 등), 제83조(취득학점의 인정) 및 기타 각 대학(원)에서 정한 별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학위수여대상 탈락자로 간주한다. [개정 2015. 9. 24., 2020. 9. 1.]

② 각 대학(원)의 장은 제1항의 학위수여 탈락자에 대하여 해당 논문심사결과를 철회조치하고, 다음 학기에 소정의 절차를 다시 취하도록 한다.

③ 각 대학(원)의 장은 제2항의 처리 결과를 대학기 소정 기간 내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학위의 취소) ① 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학위취득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학위수여 취소 대상자가 있는 경우 각 대학(원)의 장은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의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학위수여를 취소한다.

제7장 논문심사료

제20조(논문심사료 징수 및 수당 지급) 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학위논문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 수당을 지급하고자 논문심사 대상자에게 논문심사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0. 9. 1.]

② 논문심사료의 1인당 징수액 및 지급액은 별표 2와 같다.

③ 논문심사 수당은 학위 논문심사를 마치고 심사요지서와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을 때에 지급한다.

④ 각 대학(원)장은 논문심사위원 중 교외전문가에 대하여 논문심사 수당이외에 지역별로 일정금액을 여비명목으로 법인회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

제21조(논문심사료 환불) ① 논문심사대상자가 논문심사료 납부 후 부득이 논문심사진행이 어려워 철회를 요청한 경우 각 대학(원)의 장은 논문심사위원 위촉 전에 한하여 논문심사료를 환불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20. 9. 1.]

② 제1항의 환불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각 대학(원)의 장은 교무과로 환불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

제22조(논문심사료 징수 면제) ① 제12조제1항에 따라 박사학위 논문심사 대상자중 직전학기에 심사연장승인을 받은 자는 논문심사료 징수를 면제한다. 다만 심사위원 교체시 새로이 선정된 심사위원의 논문심사 수당은 각 대학(원)에 배정된 법인회계 예산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

② 제15조제4항에 따라 학위논문 제출기한을 1개 학기 연장받은 자는 다음 학기 논문심사료 징수를 면제한다. [개정 2020. 9. 1.]

③ 경영전문대학원, 국제대학원(국제개발정책학과) 및 의학대학원 석사과정 학생들에게는 논문심사료 징수를 면제한다. 다만, 소속 대학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 예산으로 논문심사위원들에게 일정금액의 논문심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 2011. 3. 31.]

부칙 <제3호, 2020. 12. 2>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